

『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명료화함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로 이해가 쉽도록 함(안 제2조)
-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확대(안 제3조)
 - 현행 :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
 - 개정 :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, 1.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에 1.5톤 이하 개별화물
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
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
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